

학교 생활 규정



맑고 밝고 훈훈하게

지평선중학교



○ 지평선중학교의 교육이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에 입각하여 마음을 알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과 조화를 이뤄 인류에 봉사할 줄 알고, 낙원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중학교이다.

본교는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앓이 즐겁고, 배움으로 나를 넓혀가고, 넓어진 자신만큼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인간을 기르고자 한다.

○ 지평선중학교의 교육철학 구현방법

1. 의(衣), 식(食), 주(住), 락(樂)의 교육과정을 통한 자력양성.
2.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가능성을 가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마음공부”라는 인성교육으로 마음을 찾아서 밝히고 마음을 넓혀서 키우는 공부.
3. 가정, 교사,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육.
4. 학생들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자연속의 “나”를 인지(認知)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성을 배우고, 나아가 타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연 현장 실습, 체험위주의 교육.

지평선 중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학생의 인권보장의 원칙과 역할】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5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2.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4. 학생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받지

않는다.

②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③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¹⁾
2.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 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⑥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단, 학교운영일정에 따른 규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⑦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⑧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한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3.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예) 마음일기장 등등)
 4.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6.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7.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⑨ 학생의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⑩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3.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4.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 ⑪ 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2.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3.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4.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5.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6.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8.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⑫ 학생의 건강에 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 ⑬ 학생의 상담과 조사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지평선 구성원 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2007.03.30.)

- 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행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2.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5.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6.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7.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8.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② 학생이 수업을 대하는 기본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2.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6.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③ 학생의 교내생활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지평선 생활수칙”에 따른다.
1. 매년 학기 말 학교구성원에게 ‘지평선 생활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 ‘지평선 생활수칙’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5장 규정개정절차를 따른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내의 시설물 사용 시 개인의 부주의로 파손이 될 경우, 그 책임 당사자가 사과 후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013.일부개정)
- ④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남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당사자가 배상한다.(2010.11.16)

제9조【교우관계】(2013.개정)

- 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② 공동체 학교(지평선 중·고등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려 학교와 기숙사에서 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도록 지도한다.
- ③ 이성간의 교우관계에서는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⑤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⑥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 얽힌 이야기, 마음공부를 통해 해결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2013.일부개정)

- ② 학교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2007.03.30.)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관련기관 신고/상담 전화(2013.일부개정)
- ③ 학교폭력예방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한다.(2013.추가)
- ④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한다.(2013.일부개정)

제11조【이성교제】(2013.삭제)

제12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2013. 개정)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 부서(관련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2013. 개정)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교내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2013.개정)
- 5. 인가된 동아리는 교외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013.개정)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4. 불건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놀이(사행성, 폭력성, 중독성)는 하지 않는다.(2010.11.16.).
- 5.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의와 복장은 자유 복장을 하되, 상황과 신분에 맞게 한다.(2007.03.30)
-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 한다.
-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학생의 두발 길이는 자유로 하되, 건강과 위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은 금지한다.
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7. (2020.삭제)
8. 신입생은 생활복 공동구매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복의 디자인, 재질을 결정하고 학교주 관 하에 생활복을 구매하여 때에 맞게 입는다.

제15조【학급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 담당자는 청소도구를 확인하고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동행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거나 해당교사의 동행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귀가 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2007.03.30.)
6. 몸이 아파 활동이 어려울 때(2013.추가)
7.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공동체 생활(학교, 기숙사)이 어려울 경우 학교는 전문 상담, 전문치료, 통학, 전학 등을 요청할 수 있다.(2013.추가)

②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단,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수칙에 정한 영역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2)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10. 지평선생활수칙에서 정한 소지 금지 물품

③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지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제16조 제2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3.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4.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5.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중 교육활동 및 생활활동 시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해당 교사가 보관하여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④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 또는 기숙사 생활 활동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5.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16의 1조【보호자의 역할】(삭제)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동급생및 상·하급생을 만나면 상호 예의를 표한다.(2007.03.30)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임교사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2013.일부개정)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외출 및 여행)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부모님께 장소, 목적, 귀가 시간 등을 말씀드리거나 허락을 얻어 외출하며 특별히 먼 곳으로 여행할 시는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야 한다.(2013.추가)

제18조【보호자의 의무】(삭제)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정보통신 윤리】

- 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 하였을 경우 교사는 교육과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2013.3.개정)
 1. 사이버 공간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동영상

이 되는 전자 기기를 금지한다.(2013.개정)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고,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한다.(2013.개정)

8.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목적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2013.추가)

② 통신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2020.삭제)

2. (2013.삭제)

3. 전산실 사용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 우선 사용되며, 전산실 사용은 학생회 전산관련 부서의 별도 사용 규정에 따라 활용한다.(2007.03.30)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0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3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 학생 동아리 활동(2009.03.01)

제24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사회의와 협의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2013.개정)

제25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2013.개정)

제26조【부서】학생회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2013.개정)

제27조【직무 및 선출】학생회의 직무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2013.개정)

제28조【대의원회】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2013.개정)

제29조【임원회】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2013.개정)

제30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상점제

제1절 생활지도

제3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2020.삭제)

제32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에 관련된 자료를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3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34조 【학생지도】

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②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③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④ 학생과 관련된 기숙사 내 생활지도는 기숙사 지도위원회에서 실행하고 기숙사 생활규정에 따른다.
- ⑤ 학생과 관련된 교내외 생활지도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에서 실행하고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지도위는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2. 지도위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안전교육부장과 학년별 책임교사(사안별 해당 학년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3. 지도위는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 시 지도위를 소집하여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4. 지도위는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 선도위원회에 생활지도 및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5조【보호자의 책임】

- ① 학생생활에 관련하여 학교가 각 호에 따라 학생 보호자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보호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담임의 상담 요청

2. 귀가 및 귀교 지도 요청
 3. 학교생활 규정 준수에 따른 지도 요청
 4.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 요청 등.
- ②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2. 학생 건강상의 이상.
 3. 학생(자녀)의 음주와 흡연 예방 지도.
 4.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학교 부적응, 학업스트레스, 이성교제, 따돌림이 나 우울증 증세, 폭력 등).
- ③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상점제

제36조【운영원칙】상점제(칭찬합시다)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들의 준법 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상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모임, **학급모임**, **기숙사 알짬 시간**에 ‘칭찬 합시다’를 활용한다.(2007.03.30)

제37조【상점제】상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2020.삭제)
 8. 자율적으로 학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9. 담당구역의 청소가 잘 된 경우
 10. (2020.삭제)
 11. 자기계발에 노력한 경우
 12. 바람직한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높인 경우
 13. 기타 모범적인 행위
- ② 학기별 상점제 점수를 누적하여 바른 생활상을 시상한다.

- ③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 ④ 학생지도 및 징계의 감경요소로 사용된 상점은 제외한다.

제38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2007.03.30)

제5장 징 계

- 제39조【징계원칙】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0조【징계의 심의】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1조【재심의 부의】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3조【징계의 방법】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4조【징계시 부과 내용】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5조【심의 확정】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6조【징계내용 통보】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7조【징계유보】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8조【징계경감 및 해제】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 제49조【재입학 또는 편입학】(2013.삭제)
- 제50조【징계 처분】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개정방법

제5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 과반수 의결
3. 학부모대표회 과반수 의결
4.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53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54조【심의와 결정】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55조【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개정된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개정된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사항: 명칭변경, 학생회 및 학생 대의원회 조직 변경)

부 칙

제1조【개정일】개정된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사항: 시설이용 및 환경,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여가활동, 통신기기 관

리, 학생회 자율성 보장, 체벌금지)

부 칙

제1조【개정일】개정된 본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